

- 제1조 **[적용범위]** 이 조건은 자판기 운영자가 공유재산 사용·수익허가 일반조건과 함께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한다.
- 제2조 **[운영시간 및 설치장소]** ① 자판기 운영시간은 해당시설 개관시간과 같으며, 시설휴관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.
- ② 사용자가 불가피하게 자판기를 철거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③ 이 경우 최소한 5일 전에 단양관광공사로 알려야 한다.
- ④ 자판기는 본인부담으로 설치하고 설치장소 및 위치는 단양관광공사에서 지정하며, 설치수량은 자판기 4대로 한다.
- 제3조 **[판매품목 및 가격제한]** ① 사용자는 자판기를 운영함에 있어 판매품목의 종류 및 가격(변동 포함)은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, 반드시 영업 개시 이전에 단양관광공사의 승인 후 판매하여야 한다.
- ② 제①항의 판매품목의 종류 중 식품위생법, 청소년기본법에서 규정한 품목 및 사회적으로 위해 논란이 있어 단양관광공사에서 판매금지 결정한 품목에 대하여는 판매할 수 없다.
- ③ 단양관광공사가 정한 판매품목의 종류 및 가격의 제한에 의하여 영업상 손해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지라도 사용자는 일절 변상의 청구를 할 수 없다.
- 제4조 **[판매가격의 결정]** ① 사용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판매할 물품의 종류, 구매가격, 판매가격을 작성하여 단양관광공사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.
- ② 판매물품의 종류 및 판매가격에 변동이 있을시, 사용자는 즉시 변동사항을 제출한 후 단양관광공사의 가격 승인을 득한 후에 물품을 판매하여야 한다.
- 제5조 **[사용허가 표찰 등 부착]** 사용자는 영업 개시일 이전에 사용목적, 사용기간, 성명 등 필요한 사항을 명기한 표찰 및 고장 시 즉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6조 **[부대시설 설치]** ① 자판기에 필요한 안내판, 기타물품 설치와 기존 시설물을 보수하거나 또는 추가 시설이 필요할 때에는 단양관광공사의 승인 후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하며, 사용허가 종료 후에는 원상 복구 하여야 하고, 원상 복구할 수 없는 영구시설물에 대하여는 계약체결 시 기부채납 한다.
- ② 운영에 필요한 물품, 시설 등은 사용자가 사전에 준비하여야 한다.
- ③ 제①항에 대하여 단양관광공사의 승인 없이 설치한 시설물을 강제 철거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
제7조 **[자판기 운영]** ① 영업개시 전에 판매품목, 가격 등이 포함된 운영계획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.

② 자판기 운영과 관련한 이용자들의 합리적인 건의(지적사항)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반영하여 시정·조치한다.

③ 사용자는 이용자에게 최대한의 편의 제공 및 친절과 함께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④ 단양관광공사에서 재정상황 등 운영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때에는 15일 이내에 이에 응해야 한다.

⑤ 음료 캔, 종이컵 등을 보관할 장소(창고 등)는 따로 없는 것을 감안하여 음료 등이 품질 되지 않도록 자판기 운영에 유의해야 한다.

제8조 **[청소 및 위생]** ① 위생을 위하여 항상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자판기 내부는 주 1회 이상 청소하여야 한다.

② 모든 판매품목은 신선한 것으로 공급하고 무허가 불량품은 판매할 수 없다.

제9조 **[유지관리비 등]** ① 허가재산 사용에 따른 일체의 유지비와 부담금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.

② 쓰레기처리비용이 발생하여 단양관광공사가 부담한 경우 단양관광공사의 요구에 따라 발생비용을 납부해야 한다.

제10조 **[제세공과금 등]** 사용자는 전기요금 등 사용허가 재산 운영에 소요되는 공공요금(자동판매기 1대당 월 10,000원)을 단양관광공사에 납부해야 한다.

제11조 **[책임]** ① 사용자는 자판기에 대한 사용관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하며 제3자에게 양도, 위탁운영하게 할 수 없다.

② 시설 전반에 대하여 항상 안전관리를 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.

③ 자판기 운영에 있어서 행한 모든 법적, 재산상의 귀책사유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.

④ 아래 사항에 대한 민·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.

- 유통기한을 초과한 물품 등 불량물품 판매로 인한 각종 사고 및 식중독 사고 등
- 안전관리상 단양관광공사가 조치해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아 발생한 사고
- 기타 자판기 이용과 관련한 각종 사고

제12조 **[연간사용료의 산정 및 반환]** ① 자판기의 연간 사용료는 낙찰금액으로 한다.

② 납부한 사용료는 사용·수익허가 일반조건 제10조 1호에 의한 경우 이외에는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반환하지 아니하며, 반환 시에는 연간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한다.

제13조 **[손해배상 및 안전관리]** ①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을 막론하고 단양관광공사에 재산상의 피해를 줄 경우 변상조치 하여야 하며, 제반사고 발생 시 그에 따

른 책임을 진다.

② 사용자가 제공한 음식물에 의한 식중독 및 위생사고 발생 시 사용자는 이에 대한 민.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해당자에게 직접 손해배상 또는 보상 등을 하여야 한다.

③ 사용자는 단양관광공사에 보관하고 있는 물품.상품 도난 및 파손과 운영적자 등의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단양관광공사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.

제14조 **[영업신고]** 사용자는 영업개시일과 동시에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득하고 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.

제15조 **[기타사항]** ① 사용자는 단양관광공사의 운영여건 변경사항 발생에 대하여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
② 사용자는 단양관광공사의 사정에 의하여 임시휴관을 실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
③ 사용자는 허가조건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단양관광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.

제16조 **[어구의 해석]** 본 특수조건에 대하여 쌍방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단양관광공사의 결정에 의한다.